

의안 번호	1218
----------	-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6. 2. 1.(월)
- 나. 제 출 자 : 서경환외 5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6. 2. 4.(목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6. 2. 16.(화)

2. 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, 장애인 정책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나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다.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라. 위원회의 임기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~ 제5조)
- 마.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근거법규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

5. 검토의견

-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우리구 「장애인 복지위원회」를 구성하여 이를 조직·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, 장애인 정책향상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< 관 계 법 령 >

□ 장애인복지법

제13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)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조직·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

제12조(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지방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,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